訴訟告知와 補助參加

Q 제가구조설계한건물의구조체부실공사시비로건축주가건축설계자, 감리자, 시공자를공동가해자로제소하여법정다툼중이사건관할법원으로부터소송고지서가송달되었습니다. 소송고지란무엇이며제가취해야할대응조치는어떤것이있습니까?(M구조K소장)

A *소송고지란 소송계속 중 소송 당사자인 원고 또는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78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계속의 사실을 통지하여(민사소송법제77조) 피고지자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하여 자신의 이익을 옹호할 기회를 줌으로써 고지자가 민사소송법상 인정되는 고지의 효과를 얻기 위한 제도*로서(제79조) 소송당사자 일방이 패소하여 특정의 제3자로부터배상청구를당할 우려가있거나 제3자에게 담보책임 또는 배상책임을 추궁하고자 할경우에 제3자가 후일 판결주문과 이유에 나와있는소송판단에어긋나는주장이나항변을하지못하도록하는데이용됩니다.

이러한이유에서 *건물의 구조체 부실공사가 소송쟁점이 되었을 경우 설계용역 원수급자인 건축설계자는 소송당사자중 피고 입장에서 구조설계용역을 하도급 받은 구조설계자에게 소송고지를 해둠으로써 법정변론 과정에서 구조와 관련하여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공학적 판단과 지식이 요구되는 쟁점 사안에 구조설계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자신을 보호하는 한편 만일 구조설계도서의 결함을 이유로 패소할 경우에 구조설계자에게 하도급 성과품에 대한 하자담보책임도 추궁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소송고지를 하기 위해서는 ①타인간에 소송이 계속 중이어야하며②고지를할수있는자는계속중인소송의당사자, 보조참가인, 당사자참가인, 승계및인수참가인, 선정당사자및이러한자로부터 소송고지를 받은 자 이어야하고③고지를받을수 있는자는당사자이외에소송에참가할수있는자임등을요건으로하며고지절차는고지원인과 피고지자가 참가하여야할이유를법률상구체적으로표시한고지이유와소송제기일시와 현재진행중인심급과절차등소송정도를기재한서면을고지를원하는소송의당사자가법원에제출하면법원은이서면을 피고지자뿐만아니라상대방 소송당사자에게도 송달하게 되는데(제78조) 경우에 따라 공시송달에의할수도있습니다.

위의 절차에 따라 소송고지서를 송달받은 피고지자는 향후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하더라도 참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 제71조에 규정된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되므로(제79조) 고지자가 패소한 때에는 고지에 포함된 이해관계 범위 내에서 그 소송의 판결중 법률상 또는 사실상 판단의 원용이 가능하여(대법원판례86다카2289) 소송고지전또는그이후에참가적효력의배제사유가발생한경우와 피고지자와 고지자간 이해가 대립되는 쟁점에 대해서 피고지자가 참가 안 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지가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었을 때이후부터는 소송참가여부에관계없이 참가한것으로간주되어 *참가적 효력을 면하지못하게 됩니다.*(대판88다카6358)

아울러 우리나라 민사소송 절차는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변론주의와 당사자 처분권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소송당사자 어느 일방이 구조설계도서의 결함이 부실공사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법정에 직접 이해당사자인 구조설계자가 참가하여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다면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을 변론해줄 리 없으며 결국 소송쟁점의 실체적 진실여부를 떠나 법정에서의 당사자 상호간 변론에 근거한 재판결과에 구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고지서가 송달되면 소송에 적극 참가하여 자신의 법익을 능동적으로 보호하여야 합니다.

통상 법관은 소송당사자간 변론과정에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특정사안에대립이있을경우해당분야전문가인감정인의감정을참고하는 경우가 적지않으므로우리회를 비롯하여구조관련학회와 접촉하여대처방안을탐색해보는것도바람직합니다.

*이와 같이 타인간 소송 계속 중 그 소송결과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소송당사자 어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보조참가*라 하며(제65조) 이때 참가한 제3자를 보조참가인또는종당사자라하고보조를받게되는기존소송의당사자는피참가인또는주당사자라로부르게됩니다.

64면에계속